

예산총칙

202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82,142,405 | 14,464,272 |
| 일반회계 | 405,499,383 | 12,164,981 |
| 특별회계 | 76,643,022 | 2,299,291 |
| 공기업특별회계 | 67,272,981 | 2,018,18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41,301,927 | 1,239,058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25,971,054 | 779,132 |
| 기타특별회계 | 9,370,041 | 281,101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,203,599 | 66,108 |
|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| 279,912 | 8,397 |
| 주차장사업특별회계 | 1,662,500 | 49,875 |
|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| 2,008,363 | 60,251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3,215,667 | 96,47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,228,604천원(일반예비비 4,000,000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20,088,220천원, 내부유보금 1,140,384천원)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